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1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1월 23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선희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3조)
-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1999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제도가 지역제한의 폐지로 지방출신의 신규 공무원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신규 직원의 경우 급료 중 많은 부분이 전·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출신의 독신·신규 직원들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만 2017년, 2018년 구비 3,950백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직원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전에 전형적인 기숙사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어하우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여론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 후에 건축 형태 등이 변경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포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